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은주 의원 외 10인

나. 의안번호 : 제2120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02. 0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02. 09.

## 2. 제안사유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시설보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설설치, 예산투입 등 증가하는 실정에서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 이에 어린이 통학로 내 보행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행안전 시설을 포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또한 명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의 명확한 명칭 및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(제7조의5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2. 16. ~ 2021. 2. 23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<sup>1)</sup>

○ 제출의견 : 수정 가결

- 도로교통법 및 본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중임

· 매년 2월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수립, 20개 단위사업 추진중

- 안 제1항 ‘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’ - 일부수정

---

1) 보행정책과-2049호(2021.2.16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-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→ 안전시설 설치
- 본 조례 사업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으로 한정(제1조)
- 안 제1항 제3호~제5호는 외래어 등으로 - 일부수정
  - 옐로카펫 → 차량속도 저감시설 (어린이 안전공간, 태양광 발광형 표지 등)
  -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→ 삭제
  -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→ 삭제
  -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→ 삭제 [경찰청 소관 법령에 맞지 않음 (도로교통법)]
-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및 재정지원 내용 - 삭제
  - 상기 내용은 본 조례 타 조항(제4조, 제10조)에서 규정함
    - ▶ 제4조(기본계획의수립 등)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·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  - ▶ 제10조(재정지원)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·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
- 어린이 교통사고가 취약한 곳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<sup>2)</sup>과 교통안전시설<sup>3)</sup>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‘옐로카펫’ 및 ‘횡단보호 LED 안전표지판’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2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

3)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

- 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‘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’의 경우 최근 개정·시행예정인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제8항4)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 제고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

동 법 제34조의25)에서 시·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‘교통안전시설심의 등’을 통해 ‘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’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 시 현행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와 재정지원을 계획적이고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--

4) 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7. 생략

8.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

5) 도로교통법 제34조의2(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·제4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.

1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

2.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

② 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·시간·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·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.